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29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9.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실제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의료진 현황 등의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현장 구급대원 등 응급환자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이 보다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른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정보시스템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보시스템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